

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3. . .
발 의 자	이상호 의원 외 24명

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(이상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. .

발 의 자 : 이상호 · 강승수 · 김근한 · 김낙관
김민성 · 김영길 · 김영태 · 김원섭
김재우 · 김정도 · 김춘남 · 박교상
박세채 · 소진혁 · 신용하 · 안주찬
양진오 · 이명희 · 이정희 · 이지연
장미경 · 장세구 · 정지원 · 추은희
허민근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규정(안 제2조~3조)

나. 기금의 관리·운용 및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11조)

다. 기금관리 공무원,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~13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13조

나. 부서검토: 예산재정과, 기업투자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붙임)

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 등) ①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7년까지 1,0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,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

2.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
3.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
4. 부지매입비 용자 지원
5. 공장신설,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
6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
7.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
8.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또는 지역중소·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기금관리·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금고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「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·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.

제5조(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
2. 구미시의회 의원
3.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투자유치담당 부서장이 된다.

제7조(위원회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
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,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
5. 그 밖에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
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둔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
3.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
4.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
5.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

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
2.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할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

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: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
2. 기금출납원: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

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예산재정과

조 례 명	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☐ 검토 사항 ○ 근거 법령 ▪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▪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13조 ☐ 주요 사항 ○ 기금설치 목적(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) ○ 기금 조성 재원 및 조성금액 ▪ 구미시 출연금, 운용 수익금, 그밖의 수익금 ▪ 2027년까지 1,000억원의 출연금 조성 ○ 기금용도 및 운용심의위원회의 관한 사항 ☐ 검토 결과 ○ 타 기금의 경우 목표기금액을 조성 후에, 조성금액을 기금에서 운용하여 이자수익 및 기타 수익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. ○ 타 기금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기금수입원으로 받아서,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. 따라서 조성 재원에 국도비 출연금 부분도 반영 필요 ○ 5년간 기금조성액은 총 500억 규모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 ☐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 ○ 기대효과 :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시, 재원으로 사용 가능 ○ 소요예산 : 2027년도까지 매년 100억 출연 필요 ○ 문 제 점 - 기금운용 시에는 대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일반회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- 기금의 경우 목표 기금액 조성 후, 조성금액을 운용하여 이자수익 등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금액을 단순 소진하는 돈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됨.	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기업투자과

조 례 명	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☐ 검토 사항 ○ 근거 법령 ▪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▪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3, 4, 8, 13조 ☐ 주요 사항 ○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규정 ○ 기금의 관리·운용 및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○ 기금관리 공무원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규정 ☐ 검토 결과 ○ 수도권 및 국내복귀 기업 지역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및 보조금 즉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☐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 ○ 기대효과 : 국내·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재원 확보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○ 소요예산 : 비용추계서 참고 ○ 문 제 점 : 기금 재원 확보	

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연 200억원, 향후 5년간 총 1,000억원 조성
3. 비용추계의 결과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세입	○ 전입금	200억원	200억원	200억원	200억원	200억원	1,000억원
	소계(a)	200억원	200억원	200억원	200억원	200억원	1,000억원

4. 재원조달 방안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시 비		200억원	200억원	200억원	200억원	200억원	1,000억원
합 계		200억원	200억원	200억원	200억원	200억원	1,000억원

5. 부대의견 : 기금운용 초기에는 시 출연금으로 대부분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재정과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
6. 작성자 : 기업투자과 투자유치1팀 류필기(☎054-480-6121)